

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6- 호

「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6년 4월 22일

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

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강북구 관내 장애인단체를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을 도모 하도록 장애인회관을 건립하고, 장애인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관련 법률 및 목적을 명시함 (안 제1조)
- 나. 장애인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정하여 적합하게 사용하고자 함 (안 제3조)
- 다. 장애인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여 조례의 목적에 맞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용허가를 하고자 함 (안 제5조)
- 라. 장애인회관 사용료 면제 및 예산을 지원하여 원활한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7조)
- 마. 조례의 목적과 지시사항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도하고자 함 (안 제10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(참조 생활보장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생활보장과(전화 : 02-901-6672, FAX: 02-901-6660, E-mail: gorilafirst@gangbuk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

라. 보내실 곳: (우편번호 01071)

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(수유동)

마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강북구 홈페이지 입법예고란(<http://www.gangbuk.go.kr>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